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10.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9. 10. 23
- 다. 상정일자 : '99. 10. 23 (제7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설명 : 사회복지과장 임시봉

나. 제정사유

-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고양하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의 보호, 고용증진 등 장애인 복지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키 위함.

다. 주요내용

- 자동판매기등의 설치범위 (제2조)
 - 군 본청, 사업소 및 읍면청사
 - 군 본청, 사업소 및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자동판매기등의 설치 허가 신청은 만 20세 이상의 장애인 세대주로 함 (제4조)
- 공공시설의 장은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5조)
- 허가취소사유 및 사용료 징수 등 규정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정열)

-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자동 판매기 및 매점, 신문·복권 판매대등을 설치하려할때 장애인의 자활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해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그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임.
-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생업 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이 마련됨으로써 고용이 촉진되어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제4조에서 신청자격을 만20세 이상의 장애인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주지에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한지, 장애인 신청이 없을 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제7조의 허가 취소 사항도 보다 세밀하게 명시하여 향후 운영시 다툼이 없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첨 부 :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및 매점신문복권판매대(이하 “자동판매기등”이라 한다)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의 자활도모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장애인에게 자동판매기등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본청, 사업소 및 읍면 청사
 2. 군본청, 사업소 및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②공공시설물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전공고) 군수, 사업소장 및 읍면장(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을 총칭하며 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등의 설치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군공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만 20세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판매기등의 설치허가 신청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1부.
2. 장애인 수첩사본 1부.

제5조 (우선허가)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

제6조 (설치의 제한) ①장애인, 장애인 단체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7조 (허가의 취소) 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2.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취소당하였을 때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부담을 공공시설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화순군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자동판매기 및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의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만료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되 신규계약자는 기존설치자의 시설투자 비용을 상호 협의 보상한다.